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8 | 2026. 6. 28. (2026. 6. 22. ~ 2026. 6. 2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여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기관 보안 역량 강화부터 공급망 공격 대응체계 마련과 정책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 후 예상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승인받고 추가 허가·심사 없이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변경관리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 계획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광학이성 질체 및 혼합물, 염,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부>는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

<소방청>은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의장 선임·변경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기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 등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고용·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시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설명·재검토·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 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AI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 계획서 심사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산업통상부) 13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1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1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1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4인) ·····	2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2인) ·····	2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5인) ·····	2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2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	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	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	2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	2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	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	2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	2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2인) ·····	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	3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김선민의원 등 11인) ·····	31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31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 ·····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 운용 동향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 [노동] 정년연장 입법 추진과 기업의 대응방안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시 공정가액 원칙 도입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및 펀드 운용사 라이선스 실무 가이드
-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 **[형사]**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심사실 이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소송]**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 - 안전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보안 체계의 전환을 통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로 보안 역량 강화부터 기반 조성까지 SW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을 강화	2026-06-24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힘

로드맵은 6.24(수), 6.25(목) 양일간 개최되는 2026년도 공급망 보안 워크숍에서 과기정통부의 SBOM 기반의 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사업 성과와 함께 발표되었으며,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이에 따라 SW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여러 기관의 연쇄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두되는 고성능 AI 기반의 공격은 광범위한 취약점 탐지와 자동화된 공격 수행을 통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어 기존 SW 공급망 보안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여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기관 보안 역량 강화부터 공급망 공격 대응체계 마련과 정책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추진

로드맵의 첫 번째 전략으로 SW 공급망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공급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SW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

공급망 보안 기준·가이드를 개발하고, 기업 보안 수준 점검과 개발 환경 전환 지원을 추진하며, SBOM을 활용한 공급망 보안 관리 모델을 확산. 또한 공급망 보안체계에 AI를 적용하여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 아울러, 기업 내 공급망 보안 인식 제고와 공급망 보안 전문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안 중심 개발 문화를 정착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는 공급망 위협의 빠른 탐지·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

버그바운티, 취약점 신고포상제,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등을 활용하여 공급망 보안 취약점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신속한 공급망 위협 탐지와 조치를 위해 AI 기반 공급망 방어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납품 정보통신제품의 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검증·대응 방안을 마련. 민간·공공 분야별 공급망 보안 위협관리 체계를 각각 구축한 후 상호 협력을 통해 공급망 위협 확산 방지를 수행

마지막 전략으로 개발·공급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SW 공급망 위협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보안 강화 기반을 조성

범정부 SW 공급망 보안협의체를 마련하고, 공급망 보안 포럼 운영을 통한 민간 자율 활동을 지원. 민간·공공분야 보안 제도에 공급망 보안 요소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보안적합성 제도의 대상 제품 확대와 요구사항을 세분화. 사이버보안 선도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인증제도와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AI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 계획서 심사기준」 마련

- 허가 후 예상되는 변경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가 허가 없이 반영 가능
- 변경관리 계획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AI 디지털의료기기 혁신 지원

2026-06-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 후 예상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승인받고 추가 허가·심사 없이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변경관리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 계획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힘

* 변경관리 계획서 :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가 예상되는 변경사항, 해당 변경의 유효성 검증방법, 변경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계획 등을 사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 명확히 문서화한 계획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과 업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수입업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국외 유사 제도에 대한 조사·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가이드라인에는 ▲변경관리 계획 대상 및 판단 절차, 변경관리 적용 대상 및 미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사례 ▲변경 항목 및 변경 방법, 변경 검증 적용 방법, 위험 이익 분석 등 변경관리 계획서 세부사항 ▲변경 이후 고려사항 등이 담겼음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변경사항의 신속한 반영이 가능해져 시장 진입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통해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2026-06-24 시행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07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금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별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24 시행
-------	--------------------	---------------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25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기준수익률 이상인 경우 등 적절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출자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01 시행 예정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 외에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및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 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농업 및 식품산업 외에 그 밖의 농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23 시행

중전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원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23 시행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상한 폐지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

-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함
-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②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강화 (별표 3의2 제2호가목)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4개월 또는 8개월 등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함

③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별표 6 제2호나목)

-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고, 종전에는 도급금액이 클수록 도급금액 대비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급금액의 24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8. ~2026.07.28.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광학이성질체 및 혼합물, 염,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 니코틴의 범위 (안 4조의10 신설)

- 니코틴은 분자식 C₁₀H₁₄N₂로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그 염류, 착물,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8113, 팩스: 044-215-8113)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법률안	2026.06.25. ~2026.07.24.
-------	---	-----------------------------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전화: 044-203-4279, 팩스: 044-203-4724)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22. ~2026.08.03.
-------	------------------	-----------------------------

궤도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이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889, 팩스: 044-201-5673\)](tel:044-201-4889)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23.
~2026.08.04.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044-201-3782, 팩스: 044-201-5574\)](tel:044-201-3782)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2026.08.03.

현행 제도는 항만에서 최근 2년간 4회에 걸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만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퇴출 대상 사업장을 대체할 업체가 없는 경우 화주 또는 선사의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등록취소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전화: 051-773-6030, 팩스: 051-773-5789\)](tel:051-773-6030)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23.
~2026.08.03.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①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 (안 제7조)
- ② 공장·창고시설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 (안 별표4)
- ③ 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 (안 별표5)
- ④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 추가 (안 별표8)
- 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 (안 별표10)

※ 문의처 :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mailto:sofangcheong@fire.go.kr) (전화: 044-205-752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2026-06-22 발의
-------	---	---------------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후보자·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의 장이 아니라 형식적 승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상법상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반복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단계에서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물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아울러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회사가 전자투표 등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미리 확인한 뒤, 잔여 의결권의 위임 확보나 의결권 배분 전략을 통해 회사 측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대응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집중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기회 보장과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약화시키고, 주주총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큼

또한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규모 상장회사조차 주주총회 관련 핵심정보의 영문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의장 선임·변경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주총회 관련 중요사항의 사전 공고 및 영문 공고를 확대하고,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2026-06-22 발의
-------	---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3조 등)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2026-06-23 발의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3조)**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의원 등 10인)

2026-06-24 발의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문 결과의 진위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 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도록 하여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03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2026-06-24 발의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 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 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임 (안 제9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2026-06-26 발의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 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및 임대 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실 태조사 결과 상당수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보다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법정 지급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및 임대유통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2026-06-26 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6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6-23 발의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34조)
- ②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34조의2)
- ③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5년 연장함 (안 제44조)
- ④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혜택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46조의8)

- ⑤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52조)
- ⑥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104조의12)
- ⑦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 (안 제104조의15)
- ⑧ 내국법인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투자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121조의26)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2026-06-25 발의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2인)

2026-06-26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24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026-06-22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026-06-22 발의

최근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자해 조장, 약물 오·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2026-06-25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른바 “인공지능 에이전트”)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위임 권한을 벗어난 작동, 외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 등이 동반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편,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의 시책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하여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및 제32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4인)

2026-06-26 발의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2인)

2026-06-23 발의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9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5인)

2026-06-24 발의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게임·만화·음악·영화·애니메이션·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26-06-24 발의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사용의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한편,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의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설비로서 최근 한국에 설치된 8개 케이블 중 2개 케이블의 내용(耐用) 연수가 경과하여 신규 케이블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통신 해저케이블은 통상 설치 후 25년 이상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통신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잦은 허가 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불허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전력 해저케이블과 같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 해저케이블과 전력 해저케이블이 모두 해저에 매설되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큰 기간 사업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3호나목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6-06-22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7항·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6-06-22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경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2조 및 제2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06-23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026-06-25 발의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026-06-25 발의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여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고용·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026-06-24 발의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절한 방식으로 배출·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6-06-22 발의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후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6-06-23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설명·재검토·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①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함 (안 제14조의4 신설)
- ③ 사용자가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 ④ 사용자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안 제23조제3항 신설)
- ⑤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결정의 대상이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의2 신설)
- ⑥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 (안 제23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6-06-24 발의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은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6-06-25 발의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은 부재함

이에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7조 및 제101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2026-06-26 발의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①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 ②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5호)
- ③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제1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2인)

2026-06-26 발의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06-26 발의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 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2026-06-22 발의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김선민의원 등 11인)

2026-06-23 발의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2026-06-24 발의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

2026-06-25 발의

최근 건설 산업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약 20~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의 균일성 및 안전사고 저감에 유리한 건설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현장 공사 중심의 기준과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와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설계·시공·감리 및 품셈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 추진체계 역시 미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모듈러 건축공사 발주 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신산업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방 건설업계의 폐업·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회복 및 국토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6/29(월) 11:00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29(월) 14:00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 국회 물포럼 제35차 토론회	한정애·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9(월) 14:00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제3차 금융 분야	이주희·이강일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6/29(월) 14:30	NSF 아·태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우재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6/30(화) 10:00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30(화) 14:00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최형두·윤한홍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수) 10:00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책 과제	송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수) 10:00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박수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7/1(수) 14:00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최형두·이해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목) 14:00	2026 CLIMATE TALKS SEOUL	김건 의원실 등	콘래드호텔 여의도
	7/3(금) 10:00	AI 시대, 여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전환 정책토론회	오세희·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6/29(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8호(통권 제32호)	국회도서관	
	6/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2호(통권 제300호)		
	7/1(수)	「금주의 서평」 제2026-25호(통권 제784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1호(통권 제299호)	국회도서관	
	6/24(수)	「금주의 서평」 제2026-24호(통권 제78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22(월)	공정거래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 운용 동향
6/25(목)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6/25(목)	노동	정년연장 입법 추진과 기업의 대응방안
6/25(목)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시 공정가액 원칙 도입
6/25(목)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및 펀드 운용사 라이선스 실무 가이드
6/26(금)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6/26(금)	형사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심사실 이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6/26(금)	소송	리스이용자의 리스로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